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77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강명구・임이자・유상범
윤한홍・최수진・김정재
박덕흠・고동진・권영진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 ---2030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 ---------- ----------2033년 12월 31일-- ---------- ---------- ---------- ---------- ---------- ---------- ---------- ---------- -----. ---------- ---------- ----------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